

수신 LMO 연구시설보유기관 및 취급 관련 기관  
(경유)

제목 시험?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(LMO) 안전관리 적극 행정 사항 안내

## 1. 관련

- 가. 「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(이하 LMO법)」 시행규칙 제14조의3(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)
- 나. 「LMO법」 통합고시 제2-8조(수입신고), 제2-11조(취급관리), 제9-5조(연구시설의 설치?운영 신고)

2. 우리부에서는 시험?연구용 LMO 안전관리 규제 합리화의 일환으로 아래 사항에 대한 행정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오니('19.10.4~), 해당 기관장께서는 생물안전관리(책임)자, 연구시설 설치운영 책임자, 해당 연구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순 번	적극 행정 사항
1	기관 정보 일괄 변경신고제 도입
2	시험?연구용 LMO 재수입 신고 서류 간소화
3	LMO 관리?운영 기록 작성 효율화

붙임. 시험?연구용 LMO 안전관리 적극행정 추진 안내. 끝.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



공역사무관 기안10/04 과학기술안전 전결10/04  
최승혁 기반팀장 이희란

협조자

시행 과학기술안전기반팀-2679 (2019-10-04) 접수 상명-2019-9625 (2019-10-04)

우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, (어진동) / <http://www.msit.go.kr>

전화번호 044-202-4853 팩스번호 044-202-6029 / [shchoi0717@korea.kr](mailto:shchoi0717@korea.kr) / 공개